

의안번호	2210713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5.9.8.
추계번호	25B3118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의2 (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) 신설	산림청장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1. 귀임·귀산촌 현황과 전망 2. 귀임·귀산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. 귀임·귀산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. 귀임·귀산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. 귀임·귀산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.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주거, 생활 및 임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. 귀임·귀산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. 그 밖에 귀임·귀산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귀임·귀산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24조의3 (귀임업인·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하거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. 이 경우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임·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3	안 제24조의4 (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이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임업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임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
4	안 제24조의 5 (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생활안정,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1. 귀임업인·귀산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	

		리 알선 2. 귀임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·기술·경영 컨설팅 지원 3. 귀임업인·귀산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·신축·수리 또는 임차하거나 산림주택 공동체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--	--	---	--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								
1	안 제24조의2 (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)	—	• 미대상 — 산림청에 따르면, 법 제23조1)에 따라 산림청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산촌진흥기본계획에 귀산촌 관련 실태조사, 귀산촌 정착 및 창업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귀임·귀산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—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(2018~2027)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는 아래와 같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용역명</th><th>수행기간</th><th>수행기관</th><th>계약금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(2018~2027) 수립</td><td>'16.3. ~ '16.11.</td><td>(사) 생태산촌</td><td>41</td></tr> </tbody> </table> 자료: 산림청	용역명	수행기간	수행기관	계약금액	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(2018~2027) 수립	'16.3. ~ '16.11.	(사) 생태산촌	41
용역명	수행기간	수행기관	계약금액								
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안(2018~2027) 수립	'16.3. ~ '16.11.	(사) 생태산촌	41								
2	안 제24조의3 (귀임업인·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							
3	안 제24조의4 (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)										
4	안 제24조의 5 (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)										

1) 제23조(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귀임업인·귀산촌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,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- 현재 귀임업인·귀산촌인에 대한 지원은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귀농어업인·귀촌인 지원에 포함됨²⁾

-
1.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·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
 2. 농림수산물의 생산·가공·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
 3. 산촌의 도로·주택·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·정비에 관한 사항
 4.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·발전에 관한 사항
 5.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
 6.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
 7.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
 8.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·경제적·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며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⑦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제24조,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(이하 “시·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산촌진흥촉진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, 시·도계획 및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**“농업”이란**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**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**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**“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**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농업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.
2. “농어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
3. **“귀농어업인”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**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르면 “농업” 및 “농업인”에 “임업” 및 “임업인”이 포함되며,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의 정의에 따라 “귀농어업인”과 “귀촌인”을 정의하고 있음
 - －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귀농인·귀촌인의 유치·정착을 위하여 교육훈련, 전담기관의 운영,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을 하고 있음

[표 1]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어업인·귀촌인 지원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사업코드)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3	2024	2025
귀농귀촌 활성화지원 (1170-407)	귀농귀촌교육	·공모교육기관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및 영농기술 교육지원 ·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을 장기체류형 실습교육지원 ·농업분야 취·창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실습·체험 교육 지원 등	7,134	6,584	6,082
	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	·귀농귀촌 지원정책 등 정보제공, 상담 및 귀농귀촌통합플랫폼 ‘그린대로’ 운영 등 지원	700	700	700
귀농귀촌 활성화지원 (정보화) (1170-408)	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	·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에서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구축·운영	6,932	1,883	1,640
농업자금 이차보전 (1038-301)	농업자금 이차보전 (귀농귀촌 정착지원)	·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·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	39,512	41,373	41,114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□ 개정안은 귀임업인·귀산촌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귀임업인·귀산촌인의 정착 지원, 귀임 초기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, 귀임업인·귀산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시행이 예상되

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귀촌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알 수 없고 개정안에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- 귀임업인·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(안 제24조의3)
- 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(안 제24조의4)
-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(안 제24조의5)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